

제301회 임시회
2011. 6. 23.(목)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6. 23.(목)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1년 6월 3일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8일

라. 상정일자 : 2011년 6월 16일

(제30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전병순)

가. 제안이유

- 무분별한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에 의해 산불 오인출동이 급증함에

따라 출동소방력 저하가 심각히 우려됨.

- 전체 산불의 26%가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부주의에 의해 발생
- 「충청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 제1항 각 호에 신고의무를 명문화 하여 산불 발생 원인인자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2조제1항제7호를 신설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하의 논·밭두렁”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나 시 찬)

-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의 위임 규정 근거하여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논두렁 및 밭두렁 소각시 신고의무를 명문화 하여
- 화재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소방력 낭비를 차단하고, 산불 원인인자를 사전에 제거하여 산불예방 및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화재예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p> <p>①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서면(팩스 및 인터넷을 포함한다)이나 구두(전화를 포함한다)로 소방본부장이나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6호(생략)</p> <p>7. <신 설></p>	<p>제2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신고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6호(현행과 같음)</p> <p>7.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u>산림인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의 논·밭두렁</u></p>

관련법령

소방기본법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그 밖에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제57조(과태료)

- ①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림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보호구역"이란 산림에서 생활환경·경관의 보호와 수원(水源) 함양, 재해방지 및 산림유전자원의 보전·증진이 특별히 필요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 ①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